1.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總理令 第551號 1996. 3. 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 제1항 제1호"로,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를"을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 제1항 제2호"로, "업종별자산총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제6조 제5항"을 "제6조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31조 제5항"을 "제31조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제9항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제15조중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제25조 제1항 제8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제51조 제6항"을 "제51조 제7항"으로, "동조 제7항"을 "동조 제8항"으로 한다.

①영 제28조 제5항·영 제29조 제3항·영 제30조 제9항·영 제30조의2 제7항·영 30조의3 제9항·영 제41조 제6항·영 제42조 제10항·영 제51조 제9항·영 제54조 제4항·영 제60조 제4항·영 제61조 제4항·영 제62조 제4항·영 제65조 제6항·영 제67조 제8항·영 제68조 제7항·영 제69조 제2항·영 제70조 제4항·영 제71조 제5항 및 영 제71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제30조 제7항"을 각각 "제30조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4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미분양

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법 제33조 제1항·법 제33조의2 제1항·법 제33조의3 제1항·법 제43조 제1항·법 제44조 제1항·법 제68조 제1항·법 제70조 제1항·법 제71조 제1항 또는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 영 제30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영 제30조의2 제3항·영 제30조의3 제2항 제2호 또는 동조 제4항 제2호·영 제4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영 제42조 제1항 제2호·영 제65조 제4항 본문·영 제67조 제1항 제2호·영 제6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영 제7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중복자산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2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각호의 자산

②영 제37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0조의3 제6항 및 동조 제9항 제2호·영 제39조 제3항(제4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41조 제6항 제2호·영 제42조 제10항 제2호 및 영 제7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0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7항 제1호에 규정된 부채상환계획서 및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과 같다.

②영 제30조의3 제9항 제1호 및 제2호·영 제41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영 제42조 제10항 제1호 및 제2호·영 제71조의2 제5항 제1호 및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0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부채상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의2 서식과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중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를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

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를 "주민등록표 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한다.

제31조 제8항중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준공검사서상의"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69조 제2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말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중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40조의2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에 의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①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영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2세대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영 제97조 제4항 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제5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제128조"를 각각 "제117조"로 하고, 동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중 "제78조"를 각각 "제58조"로 한다.

별표 9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농선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

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가가치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3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 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중 종업원수의 산정기준에서 당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영 제2조 제1항).

나.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되는 자산의 처분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본·지점, 사택, 합숙소등으로 함(영 제20조의 2).

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에 폐타이어등을 추가함(영 제53조).

라.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선을 추가함(영 별표 9).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세 액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및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		⑦농공단지등지정일자		
⑧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				
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⑩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사 업 명 및 종 목	
⑫감 면 대 상 사 업 (소 득)	☐ 창업중소기업 ☐ 기술집약형(수도권, 수도권외지역) ☐ 농어촌지역 ☐ 중소제조업등 ☐ 기술이전소득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 농업회사법인
⑬감 면 대 상 세 액	원 ⑭감면비율 %
⑮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득세 ☐ 법인세 원
⑯최 저 한 세 적 용 감 면 배 제 금 액	
⑰감 면 세 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6조제8항 ☐ 제7조제4항 ☐ 제11조제3항 ☐ 제49조제2항 ☐ 제50조제5항 ☐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구비서류

1. 농공단지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2. 영 별표 10 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영 별표 10 제2호·제3호·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 사업이 동 각호의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2226-45411민
'96. 1. 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뒷 쪽)

1. ⑯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⑰감면세액란에는 ⑮감면받고자하는 세액에서 ⑯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호또는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⑥ 사업전환일		⑦종전업종양도·폐지일	
	⑧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⑨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업태·종목 (분류기호)	( ) ( )	⑪종전(기존)의 업태·종목(분류기호)	( )	
⑫ 사업전환유형	⑬☐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⑭☐기존의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			
⑮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원	⑯ ⑮의 30%	원	
⑰당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액(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⑱ 계	원	100%	
	⑲기존업종의매출액	원	⑳ %	
	㉑신규업종의매출액	원	㉒ %	
㉓ 감면대상소득금액	원	㉔감면비율	%	
㉕ 감면대상세액	☐소득세 ☐법인세		원	
㉖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원	
㉗ 감면세액 (㉕ - ㉖)			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⑮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없 음

22226-53111민
'96. 1.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뒷 쪽)

1. ⑥사업전환일은 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입하고,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의 70%이상 점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입합니다.
2. ⑦란에는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을 기입합니다.
3. ⑩·⑪란에는 업태·종목을 기재하고 ( )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기호(5자리수)를 기입합니다.
4. ⑮~㉒란은 ⑭에 해당되는 사업자만 기입합니다.
5. ⑳·㉒란에는 총매출액 ⑱에서 ⑲·㉑란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합니다.
6. ㉖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과세연도	. . . ~ .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에관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당해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및비목 / 계정과목	⑥	⑦	⑧	⑨	⑩	⑪ 계
⑫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⑬직전2년간지출	기간	. . ~ . .	. . ~ . .	계
합계액	금액			

⑭직전2년간연평균지출액 원

$$⑬ \times \frac{24}{\text{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 월수}} \times \frac{1}{2} \times \frac{\text{당해연도 월수}}{12}$$

⑮증가지출금액(⑫-⑭)

공제세액

⑯기술 및 인력개발비		⑰공제율	⑱공제세액	⑲비고
당해연도 총지출액(⑫)	⑳중소기업	15/100		
	㉑중소기업외의기업	5(10)/100		
㉒증가지출금액(⑮)		50/100		
㉓당해연도에 공제받을 세액(⑳,㉑,㉒)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 ⑥~⑩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구분 및 비용별로 구분 기입합니다.	수수료 없 음

22226-40911민
'96. 1.30 개정

이 명세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뒷 쪽)

1.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⑬감면세액란에는 ⑪법인세에서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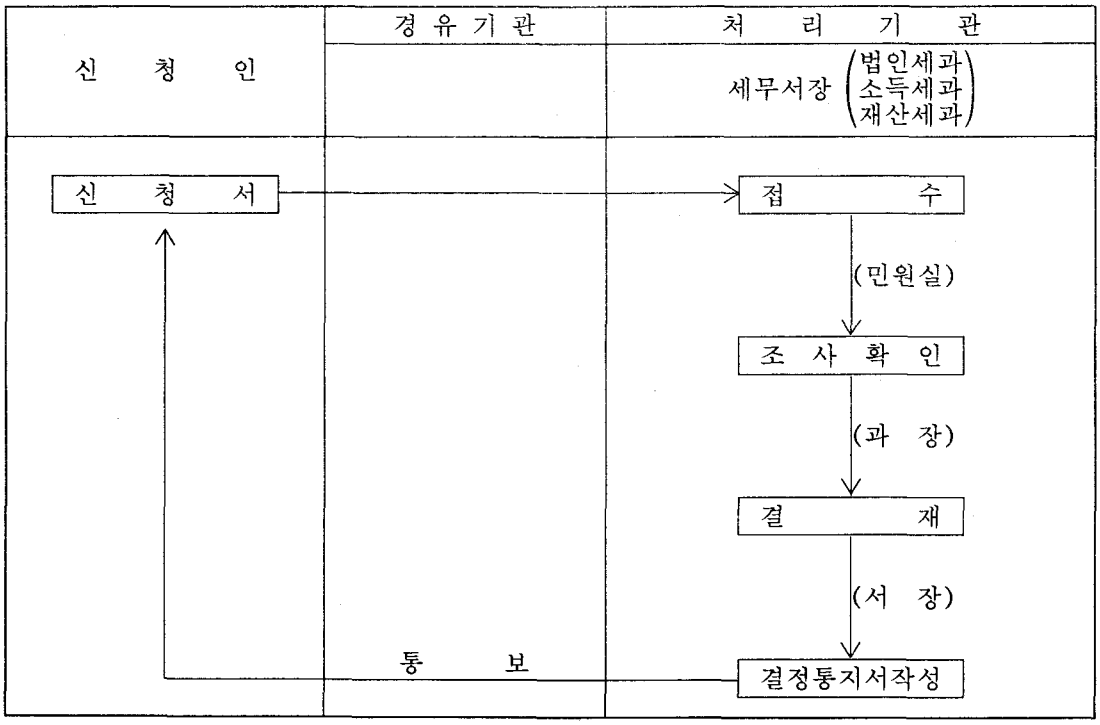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세액면제(감면)신청서(갑)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감면)받고자하는 세액	⑦법 인 세	
	⑧ 특별부가세	
	⑨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2226-41121민
'96.1.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뒷 쪽)

1. ⑦~⑨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감면종합한도의 규정 적용후의 순수면제(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면제(감면)신청 근거 조항 명세

□중소기업간의 통합 : 제28조제5항	□법인전환 : 제29조제3항
□사업전환중소기업 : 제30조제9항	□영세중소사업자경영안정지원 : 제30조의2제7항
□재래사업장의 이전 : 제30조의3제9항	□공장의 지방이전 : 제41조제6항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 제42조제10항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 제51조제9항
□자경농지양도 : 제54조제4항	□공공사업용토지양도 : 제60조제4항
□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 : 제61조제4항	□국가등에 양도 : 제62조제4항
□사원용주택취득 : 제65조제6항	□10년이상경영목장이전 : 제67조제8항
□5년이상가동공장이전 : 제68조제7항	□간척지등의 양도 : 제69조제2항
□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 : 제70조 제4항	□사회복지법인등의 업무용토지양도 : 제71조제5항
□박물관등의 이전 : 제71조의2제5항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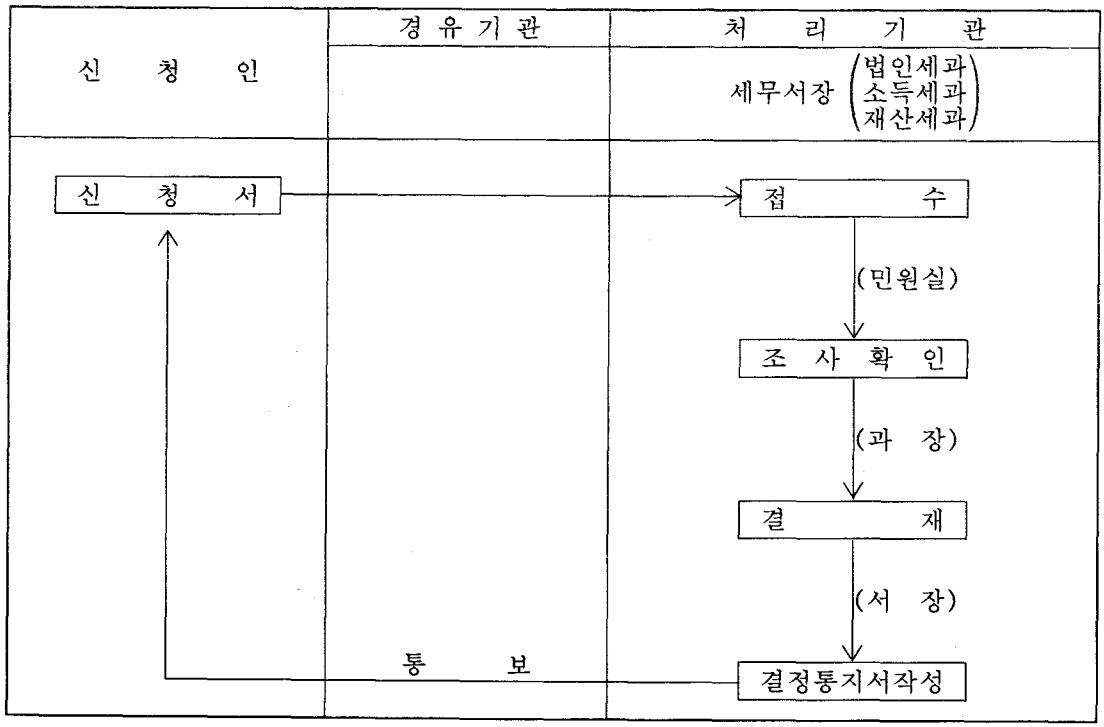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득금액	⑦ 농지소득금액			
	⑧ 농지소득외의 소득금액			
	⑨ 계			
⑩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감면소득		1,200만원 × 조합원수 (명) × 사업연도월수/12 = (만원)		
⑪ 감면소득계(⑧과 ⑩중 적은 금액 + ⑦)		원		
⑫ 감면세액(법 제52조제1항 적용전 산출세액 × ⑪/⑨)		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2226-55911민
'96. 1. 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영농조합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⑧주소지또는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⑨ 과 세 기 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⑩ 당해과세기간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총소득금액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⑬ 농지소득에서 받은 배당소득 (⑩×⑫/⑪)	
⑭ 감면대상배당소득 (1,200만원+⑬)	
⑮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2226-56011민
'96. 1. 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장기임대주택세액면제(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양도자)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양도물건	⑥양도일자				
	⑦소재지				
	⑧물건표시				
	⑨대지면적		⑩건물면적		
주택임대기간	⑪개시및종료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공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세액면제되는기간	년	⑭세액면제비율		%
⑮면제대상소득		원	⑯면제받고자 하는세액		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한 경우 제외)
2.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1부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2226－24311민
'96. 1. 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과 세 이 연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또는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양 도 자 산

⑦ 자 산 명	⑧ 소 재 지	⑨ 면적·수량	⑩ 양 도 일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
토 지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합 계					

취 득 (예 정) 자 산

⑬ 자 산 명	⑭ 소 재 지	⑮ 면적·수량	⑯ 취 득 일	⑰ 취득(예정)가액	⑱ 이연취득가액 (⑰×⑫/⑪)
토 지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합 계					

과 세 이 연 세 액

⑲ [양도소득세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⑳ 과세이연세액(⑲×⑰/⑪)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0조제9항 / [ ] 제41조제6항 / [ ] 제42조제10항 / [ ] 제67조제8항 / [ ] 제68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당해 과세이연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2226-65211민
'96. 1. 30 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뒷 쪽)

1. ⑫취득가액란에는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97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⑰취득(예정)가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1호·제41조 제1항 제1호·제42조 제1항 제1호·제6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입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⑱이연취득가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2호·제41조 제2항·제42조 제4항·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입합니다.(⑰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한 경우에는 ⑱란을 기입하지 아니함)
4. ⑳과세이연세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3호·제41조 제2항·제42조 제4항·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세액을 기입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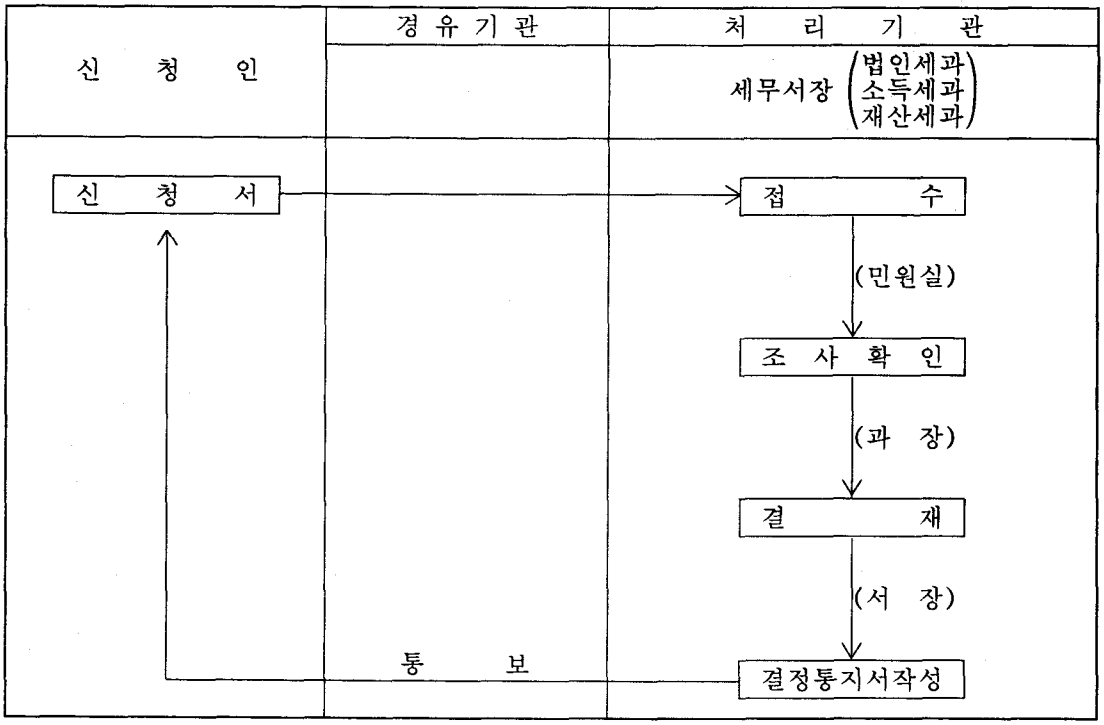

〔별지 제18호서식〕

□이 전
□사업전환] 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보 고 내 용

⑥양 도 일		⑦이전(사업전환)일	
⑧이 전 전 소 재 지		⑨이 전 후 소 재 지	
⑩전 환 전 사 업		⑪전 환 사 업	

⑫취득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가 타

⑬ 취 득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	취 득 일	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⑭양도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⑮ 양 도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	양 도 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0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 / □ 제30조의3제9항제1호 또는 제2호 / □ 제4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 / □ 제42조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 / □ 제68조제7항제1호 또는 동조제8항 / □ 제71조의2제5항제1호 또는 동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사업전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없 음

22226-24211민
'96. 1. 30. 개정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의2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보 고 내 용

양도일 현재 금융부채 총액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부채 총액		⑪(⑧-⑩)
⑥금융기관명	⑦차입일자	⑧금 액	⑨금융기관명	⑩금 액	금융부채순감소액

양 도 자 산 명 세

⑫자산명	⑬소 재 지	⑭면 적	⑮취득일자	⑯취득가액	⑰양도일자	⑱양도가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2226-72011보
'96. 1. 30 제정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 이 전 / □ 사업전환 계획서

제출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이전(사업전환)계획내용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전 환 전 사 업		⑨전 환 예 정 사 업	
⑩이 전 전 소 재 지		⑪이 전 예 정 지	

⑫취득예정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⑬양도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⑭ 양 도 자 산 명 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수량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0조제9항제2호 / □ 제30조의3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 제39조제3항 / □ 제40조제3항 / □ 제41조제6항제2호 / □ 제42조제10항제2호 / □ 제68조제7항제2호 / □ 제7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사업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없 음

22226-23911민
'95. 1. 30 개정

이 계획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의2서식〕

부채상환계획(명세)서

제출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⑥업 종		⑦사업개시일자	

결손금	⑧ 직 전 1 기	⑨ 직 전 2 기	⑩ 직 전 3 기

부채상환계획(명세)

양도일 현재부채			상환계획(명세)		⑯(⑬-⑮)
⑪금융기관명	⑫차입일자	⑬금 액	⑭상환일자	⑮금 액	부채(예정)감소액

양 도 자 산 명 세

⑰자 산 명	⑱ 소 재 지	⑲면 적	⑳취득일자	㉑취득가액	㉒양도일자	㉓양도가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계획(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2826-72111일
'95. 1. 30 제정

이 계획(명세)서는 무르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주택임대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임대주택신축(취득)일자		⑦임 대 호 수	

⑧임대주택소재지	⑨신 축 일	⑩건 물 면 적	⑪대 지 면 적	⑫임대개시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없 음

22226-65511민
'96.1.30 개정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금융기관의중복자산특별부가세감면신청서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합 병 등 기 일

신 청 내 용

⑦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⑧ 양 도 가 액	
⑨ 면제대상금액(양도차익)	
⑩ 감 면 세 액	

양 도 자 산 명 세

⑪ 자산용도	⑫ 자산명	⑬ 소 재 지	⑭ 면 적	⑮ 취득일자	⑯ 양도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2226-72211민
'96. 1. 30 제정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미분양주택 양도명세

④ 소재지	⑤ 토지면적	⑥ 건물면적	⑦취득(계약)일자	⑧ 양도일자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⑨ 과세표준		⑫ 총수입금액	
⑩ 특례세율	20%	⑬ 필요경비	
⑪ 산출세액		⑭ 차감소득금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1부
3. 미분양주택 취득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2226-72311민
'96. 1. 30 제정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